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2호라목을 삭제한다.

제13조의3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[별표2] 제5호 자목에 따른 세대주·세대원 성명, 주민
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

제1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11(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) ① 법 제16조의2
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
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소득규모, 가구원 수 등 가구 정보에 관한 사항
2.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
3. 냉·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
4. 에너지이용권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간이조사
(이하 “간이조사”라 한다)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 산업통상자원부

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한다.

③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에너지이용권의 수급 자)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	제13조의2(에너지이용권의 수급 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 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	2. ----- ----- --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 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 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 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 는 경우	<삭 제>
마. (생 략)	마.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3(자료제공 요청 대상)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“가족관계증명 · 국세 및 지방 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	제13조의3(자료제공 요청 대상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
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
음 각 목의 자료

가. (생략)

나. 주민등록표 등본

다.·라. (생략)

2. (생략)

<신설>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
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
2] 제5호 자목에 따른 세대
주·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
번호 등에 관한 정보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11(에너지이용 소외계층
에 관한 실태조사 등) ① 법 제1
6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
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
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다
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소득규모, 가구원 수 등 가구
정보에 관한 사항

2.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
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
사항

3. 냉·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
소비행태에 관한 사항

4. 에너지이용권 이용실태에 관

한 사항
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간
이조사(이하 “간이조사”라 한
다)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
시행한다.

③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
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
로 실시하며, 효율적인 조사를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
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
식으로 할 수 있다.